



2024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2024.01

유 의 사 항

1. 본 책자의 발간 이후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이며, 주요 알림사항 등도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 메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책자에서 안내되는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표준모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기준정보는 본 책자의 (충청북도) 지침대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 표기: 2024년 기준정보 변경 수정사항
※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 2일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부터 적용
3. 각 시군별 고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문의사항 ARS 「1566-3232」

구분	통합전화번호(+세부 단축번호)	
보육관련	1566-3232 > ①	
행복e음 시스템	1566-3232 > ② >	① 통합업무, 사례관리, 보육, 아동청소년, 초중고 교육비
		② 장애인복지, 자활, 긴급복지, 보건지원
		③ 사용자관리 및 접속장애, 의료급여, 국토부 사업
		④ 바우처, 시설법인, 지자체지원, 기타 생활지원
		⑤ 정부3.0감면신청, 무중단 시스템 및 그 외 사업
		⑥ 키퍼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④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공통지침

기준정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기준정보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통지침을 통해 혼선 예방

□ 기본원칙

- 각 사업에 별도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지침을 따름
- 관련법령, 지침, 기준 정보는 개인 및 기관의 자의적 해석 금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897호에 의하여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함
- 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식으로 근로한 기간'으로 해석하며, 자원봉사인턴실습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본인이 충족한 자격(자격증, 학위)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은 등록 사군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제는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하는 것이 원칙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선결제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별 목적이 다르므로, 2개 이상 서비스를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예)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의 체험학습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의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을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실시(필수)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 사전·사후 검사는 1:1(제공인력:이용자)로 진행
 - 공통척도 검사 시기: 옥스퍼드행복감(사전·사후), 서비스 만족도(사후)

□ 기본서비스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제공기록지 및 증빙자료를 통해 제공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월·분기·반기·연 1회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정보 위반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횟수와 회당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제공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과 과정·과제·시험 준비, 학습지(문제집) 풀이 등 서비스의 목적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음

□ 충청북도 이용 제한 기준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와 아동·청소년역사탐험프로젝트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과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정신건강토크케어서비스와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요양원 입소자 및 병원입원자 등은 서비스 이용 제한



목 차

CONTENTS

2024년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13
-------------------------------------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010715)	22
2.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020115)	30
3.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030715)	33
4. 인터넷 과의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040115)	36
5. 우리아이 행복충전 서비스(130315)	40
6.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130515)	43
7.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141915)	46
8. 아동청소년 희망돌봄서비스(150115)	48
9.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160515)	51
10.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160615)	54
11. 가족관계 형성지원 서비스(160715)	56
12. Go And Go, Dream 제천유소년야구단(160815)	60
13. 유·아동 통합지원서비스(231015)	62
14.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290215)	65
15.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990415)	68
16. 꿈꾸는 요리아카데미(990615)	71
17.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990715)	74
18. 진로컨설팅 프로그램(990915)	77
19.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991315) 신규	80

[노인 대상 서비스]

20.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서비스(100115)	84
21.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190415)	87
22.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250215)	90
23.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 서비스(280115)	93
24. 식사영양관리서비스(991115)	95

[장애인 대상 서비스]

2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070101)	99
26.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090415)	102
27.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210215)	105
28.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운동서비스(280715)	108

[노인·장애인 대상 서비스]

29.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060101)	112
3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080415)	115
31.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재활서비스(200115)	118

[가족/기타 대상 서비스]

32. 성인심리지원서비스(991215)	122
-----------------------	-----

※ 제공기관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매뉴얼(제공기관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정보 》 자료실

사업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통척도지

1. 옥스퍼드 행복감	127
2. (단축형) 행복감	129
3. 서비스 만족도	131
4. 서비스 만족도(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32

※ 그 외 서비스별 사전·사후검사 척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활용 가이드북」, 「22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척도 개편 연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정보 》 지원단 발간물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적용시점: 2024. 1. 2.(월)
- 적용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 변경내용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가구특성(욕구기준)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①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②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또는 K-WISC-V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③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가구특성(욕구기준)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아래 표에 제시한 전문가별 임상심리평가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검사결과지 등 모든 제출서류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table><tr><th>전문가</th><th>임상심리평가도구</th></tr><tr><td>의사</td><td>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의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로 한정</td></tr><tr><td>언어재활사(1급)</td><td>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td></tr><tr><td>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전문상담교사</td><td>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불안정성척도), RCMAS(이동불안정성척도), K-PRC(한국아동인성평가지), K-CYP(아동청소년성장척도),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K-WISC-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 아동기능검사), 덴바검사(DDST)번별달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td></tr></table>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의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로 한정	언어재활사(1급)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의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로 한정								
언어재활사(1급)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전문상담교사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불안정성척도), RCMAS(이동불안정성척도), K-PRC(한국아동인성평가지), K-CYP(아동청소년성장척도),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K-WISC-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 아동기능검사), 덴바검사(DDST)번별달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우선순위 1.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진단서 또 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신건강사업 안내」 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 용하여 검사한 후 점도점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지 4. 언어재활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 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소견서 + 언어검사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우선순위 1.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u>임상심리평가 결과지</u> 4. <u>언어재활사 1급(소견서+언어검사 평가결과지), 정신 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 교사(소견서+임상심리평가 결과지)</u> * <u>소견서에는 면허(또는 자격증)명과 면허(또는 자격증) 번호 확인</u>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월 180,000원(이용자 선택: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td><td>162,000</td><td>18,000 (~38,000)</td></tr><tr><td>2등급(중위소득120% 이 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가 아닌 자)</td><td>144,000</td><td>36,000 (~56,000)</td></tr><tr><td>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td><td>126,000</td><td>54,000 (~74,000)</td></tr></table>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162,000	18,000 (~38,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 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56,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26,000	54,000 (~74,000)	■ 서비스 가격: 월 180,000원(이용자 선택: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62,000</td><td>18,000 ~38,000</td></tr><tr><td>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44,000</td><td>36,000 ~56,000</td></tr><tr><td>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td><td>126,000</td><td>54,000 ~74,000</td></tr><tr><td>4등급(중위소득160%초과)</td><td>18,000</td><td>162,000 ~182,000</td></tr></table> ※ 단, 가격탄력제도 가격(200,0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	18,000 ~38,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56,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26,000	54,000 ~74,000	4등급(중위소득160%초과)	18,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162,000	18,000 (~38,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 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56,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26,000	54,000 (~74,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	18,000 ~38,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56,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26,000	54,000 ~74,000																											
4등급(중위소득160%초과)	18,000	162,000 ~182,00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조기 개입 서비스 기본프 로그램 ①~⑤	⑥ <u>인지프로그램(추가)</u>: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 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u>아동의 인지발달 향상</u> * <u>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 활용 불가)</u>																										

서비스명	항목	기준	변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효과성 검증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 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별표3]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영역</th><th>심리평가도구</th></tr><tr><td rowspan="3">기본 서비스</td><td>언어 프로그램</td><td>PRES, REVT, SELSI, U-TAP, P-FA</td></tr><tr><td>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td><td>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td></tr><tr><td>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td><td>K-CBCL, K-ARS, RCMAS, K-PRC, K-CYP</td></tr></table>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 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P-FA	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 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별표1]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영역</th><th>심리평가도구</th></tr><tr><td rowspan="4">기본 서비스</td><td>언어 프로그램</td><td>PRES, REVT, SELSI, U-TAP, P-FA, KM-B CDI, TOPS, KOSECT, LSSC</td></tr><tr><td>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td><td>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td></tr><tr><td>인지 프로그램</td><td>RA-RCP, KNISE-BAAT BASA</td></tr><tr><td>공통 (서비스대상 욕구판단)</td><td>K-CBCL, K-ARS, RCMAS, K-PRC, K-CYP, K-CDI, KP-C, K-WISE-IV, K-ABC-2</td></tr></table>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 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P-FA, KM-B CDI, TOPS, KOSECT, LSSC	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	인지 프로그램	RA-RCP, KNISE-BAAT BASA	공통 (서비스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K-CDI, KP-C, K-WISE-IV, K-ABC-2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 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P-FA																							
	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 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P-FA, KM-B CDI, TOPS, KOSECT, LSSC																							
	놀이/미술 /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K-YSR, MT-MAP, IMTAP, MMPI *주관적 검사: HTP, K-HTP, KFD, SCT, KSD																							
	인지 프로그램	RA-RCP, KNISE-BAAT BASA																							
	공통 (서비스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K-CDI, KP-C, K-WISE-IV, K-ABC-2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서비스 시간	■ 체험학습프로그램 월 1회(480분)	■ 체험학습프로그램 월 1회(360분)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	대상자별 지원기간	6개월	12개월																						
	재판정	1회	삭제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추가)	■ 우선순위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교육 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180,000원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td><td>180,000</td><td>20,000</td></tr><tr><td>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가 아닌 자)</td><td>170,000</td><td>30,000</td></tr><tr><td>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td><td>160,000</td><td>40,000</td></tr></table>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180,000	20,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가 아닌 자)	170,000	30,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60,000	40,000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180,000	20,000																							
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가 아닌 자)	170,000	30,000																							
3등급(중위소득120%초 과~160%이하)	160,000	40,00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기준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안내



□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사업 수: 총 32개

총 사업수(32개)	서비스명	
전국표준 (2개)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시도개발 (11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 ■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재활 서비스 ■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군공동개발 (3개)	■ 아동건강 관리서비스(청주시, 제천시) ■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청주시, 진천군)	
시군개발 (16개)	청주시	■ 인터넷 과의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서비스 ■ 가족관계 형성지원 서비스 ■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프로젝트
	충주시	■ 유·아동 통합지원서비스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운동 서비스
	제천시	■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 ■ Go And Go, Dream 제천유소년야구단 ■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 서비스 ■ 꿈꾸는 요리아카데미
	영동군	■ 우리아이 행복충전 서비스
	진천군	■ 지적장애인 사회성 발달 심리지원서비스 ■ 식사·영양관리서비스 ■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괴산군	■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
	음성군	■ 아동청소년 희망돌봄서비스

□ 세부사업별 표준모델

○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별 내용 요약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715)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만18세 이하	<u>소득기준</u> 없음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020115)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만0세 ~만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아동 상호 관계증진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030715)	무상악기제공 및 대여,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연주회 관람 (외부 문화공 연, 연주회), 향상음악회 참여 등	만7세 ~만18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인터넷 과의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040115)	인터넷 과다사용 대상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 을 통하여 문제행동 감소	만18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우리아이 행복충전 서비스 (130315)	학습습관 형성 지원과 심리안정을 위한 멘토, 생활습관형성지원,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7세 ~만15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서비스 (130515)	사회와 문화 활동,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을 통해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만7세 ~만15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 (141915)	'한국사'와 연결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역사교 육을 접목한 살아있는 역사체험 제공	만9세 ~만13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 희망돌봄 서비스 (150115)	기초 돌봄이 취약한 맞벌이 저소득 가정 대상 에 돌봄서비스 제공	만5세 ~만15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160515)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체질 아동과 부모에 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 해 건강한 성장 지원	만5세 ~만15세 이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제천시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 (160615)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 지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만4세 ~만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가족관계 형성지원 서비스 (160715)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중 재서비스를 위해 부모, 형제 등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 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만5세 ~만18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Go And Go, Dream 제천 유소년야구단 (160815)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동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	만8세 ~만1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유아동 통합지원서비스 (231015)	개인별 맞춤형 정서 지원 및 학업 지원으로 전인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	만15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 (290215)	승마교육을 통한 지역아동의 신체발달 및 사 회성 발달 증진도모	만5세 ~만9세 이하	없음	없음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990415)	과학실험 교육프로그램과 토론, 발표회, 체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학학습증진	만7세 ~만13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없음
꿈꾸는 요리 아카데미 (990615)	보고, 만들고, 맛보는 활동을 통해 편식 예방 및 바른 식습관 형성과 요리활동을 통해 감성 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 도모	만6세 ~만13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990715)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 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 교감과 유대감 형성 지원 및 양육부담 감소	만1세 ~만5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990915)	진로인식의 성숙 및 진로탐색(결정)을 지원하 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 기주도적 진로계획 수립	만12세 ~만19세 이하	없음	없음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991315)	치유농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정감과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	만18세 이하	없음	없음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0107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특성(육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육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아래 표에 제시한 전문가별 임상심리평가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table><tr><th>전문가</th><th>임상심리평가도구</th></tr><tr><td>의사</td><td>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로 한정</td></tr><tr><td>언어재활사 (1급)</td><td>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td></tr><tr><td>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2급), 전문 상담교사</td><td>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평정척도), RCMAS(아동불안 척도검사),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인성검사), K-WISE-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아동용개별지능검사), 덴버검사(DDST덴버발달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td></tr></table>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로 한정	언어재활사 (1급)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2급), 전문 상담교사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평정척도), RCMAS(아동불안 척도검사),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인성검사), K-WISE-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아동용개별지능검사), 덴버검사(DDST덴버발달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로 한정																		
언어재활사 (1급)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2급), 전문 상담교사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평정척도), RCMAS(아동불안 척도검사),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인성검사), K-WISE-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아동용개별지능검사), 덴버검사(DDST덴버발달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음																			

	※ 중복이용 불가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1.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4. 언어재활사 1급(소견서+언어검사 평가결과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소견서에는 면허(또는 자격증)명과 면허(또는 자격증) 번호 확인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자격, 학력, 경력 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함) [슈퍼바이저]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인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슈퍼바이저 지정기준: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 2023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1인 이상) *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2023~202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제 공 인 력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감각통합, 언어(심리, 상담, 놀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특수교육학, 언어치료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경력은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서류 등으로 확인) ※ 제공기관은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프로그램 중 3가지 이상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그에 맞게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80,000원 (이용자 선택: ~20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	18,000원 (이용자 선택: ~38,000원)
	2등급(중위소득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이용자 선택: ~56,000원)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60%이하)	126,000원	54,000원 (이용자 선택: ~74,000원)
	4등급(160% 초과)	18,000원	162,000원 (이용자 선택: ~182,000원)
* (이용자 선택) 가격탄력제도 적용: 서비스 가격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별도)추가서비스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서비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가격탄력제도 가격(200,0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함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 비 스 제 공 기 간 및 재 판 정 여 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여부를 판단하게 함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월 4회 (주 1회) / 회당 50분: 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회당시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⑥ 인지프로그램 - 내용: 아동의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 - 효과: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 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 발달 향상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학습지 활용 불가)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 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로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를 활용함 (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가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7세 이하의 유·아동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별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KM-B CDI(한국판 맥아더 베이츠 의사소통 발달평가) , TOPS(언어문제해결력검사) , KOSECT(구문의미 이해력 검사) , LSSC(학령기아동 언어검사)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DDST, 덴버발달선별검사), K-YSR(자기행동평가척도), MT-MAP(음악치료진단평가도구), IMTAP(개인음악치료영역별진단평가), MMPI (다면적인성검사) *주관적 검사: HTP(집-나무-사람그림검사), K-HTP(Kinetic-Hous -Tree-Person 동적 집-나무-사람검사), KFD(동작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 KSD(동작학교생활화, 사회성그림검사)
	인지프로그램	RA-RCP(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검사) , KNISE-BAAT(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읽기, 쓰기) , BASA(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평정척도), RCMAS(아동불안 척도검사),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 K-WISE-IV(한국판 웨슬러지능 검사) , K-ABC-2(한국판 카우프만아동용개별지능검사)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이용 원칙 (기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 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30%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경우, 다섯 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매뉴얼 1부씩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이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	---

[부록]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요약본]

신 청 자					
이름				성별(○ 체크)	남 여
연령	만 세	학년		보호자	
소견 요약					
아동의 주 문제	※ 아동의 욕구(문제행동)의 종류에 체크하세요(중복 √ 체크 가능)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② 정서적 어려움: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 ③ 사회성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1: 언어문제 ☐ ④ 발달장애 경계 2: 인지문제 ☐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 ⑥ 기타 (그 밖의 문제행동:) ☐				
사용한 검사 도구	검사도구		정상범위/ 백분위	평가결과(점수)	참고점수 (하위척도의 점수)
	전문가 보고				
※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중 해당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 란에 기재하시오.					
전문가		임상심리평가도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의 경우, 별도의 검사 결과지 제출 없이 진단서(소견서)만 제출 -단, 의사의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로 한정			
언어재활사(1급)		PRES(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REVT(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SELSI(영유아언어발달검사), U-TAP(APAC,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P-FA(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 중 택1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2급), 전문상담교사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명장척도), RCMAS(아동불안척도검사),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인성검사), K-WISE-IV(한국판 웨슬러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 아동용지능검사), 덴버검사(DDST덴버발달선별검사), K-CDI(아동발달검사) 중 택1			
평가 소견	(소견 및 치료의 주관적 서술)				
	(소견의 주관적 평가: 해당되는 번호에 √ 체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심각 양호→				
검사 기관					
기관명				기관 연락처	
기관주소					
작성자이름				작성자 자격번호	
작성자이메일				작성자 연락처	

위의 소견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작성자: _____ (인)

※ 첨부: 검사결과지 1부

②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02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0세~만 6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의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중복이용 불가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등 (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우선순위: 1.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2.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 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하여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제 공 인 력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경력은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 인지, 정서사회성, 부모상담 영역) 모두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그에 맞게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서 비 스 제 공 기 간 및 재 판 정 여 부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월 5회 제공)해야 함. 다만 초기상담 시 이용자가 원하면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1인이 1명의 이용자에게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월4회 (주1회)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 언어발달영역의 제공가능인력은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가 제공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모상담 영역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1회/ 최소 10분 이상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조기 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 3단계: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 4단계: 서비스 종결 시 종결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사후 검사 의무 실시)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부모용) (필수) K-DEP(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또는 K-ASQ(한국형 부모작성형 유아모니터링체계) (선택)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DEP: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K-ASQ:한국형 부모작성형 유아모니터링체계/ SELSI: 영유아언어발달검사/ P-FA, P-FAII/ REVT:수용, 표현 어					

	회력 검사/ PRES: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구문의미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TOPS)검사/ U-TAP: 우리말조음음운평가/ APAC: 아동용발음평가검사/ 브레인메모리/ K-CDI: 한국판 아동발달검사/ 한국형 Denver II 검사/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① 발달전반 척도 증진 정도 70% 향상 ② 양육태도 척도 증진 정도(부모양육태도 검사) 20% 향상 ③ 아동 발달 수준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향상정도(투사검사(HTP: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KFD: 가족동적화 검사) 등) 80% 향상 ④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⑤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③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0307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7세~만 18세 아동·청소년 ■ 가구특성(욕구기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참고자료]의 검사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1. 다문화가정 2. 한부모가정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②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③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악기 증빙 필수: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지휘전공은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이 클래식 프로그램 + 정서순화프로그램인 경우,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하며,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없이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head><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head><tbody><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body></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1일 2회 서비스제공 불가: ①클래식 이론 및 실기와 ②정서순화프로그램을 하루에 모두 제공 불가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8">기본 서비스</td><td>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등)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td><td>월4회 (주1회)</td><td>60분</td></tr><tr><td>2.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td><td>월4회 (주1회)</td><td>60분</td></tr><tr><td>3. 일반 연주회 관람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 불가</td><td colspan="2">반기별 1회</td></tr><tr><td>4. 향상음악회 참여: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td><td colspan="2">반기별 1회</td></tr><tr><td>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td><td colspan="2">제공기간 중</td></tr><tr><td>6. 참여 아동 합주 (※최소 20분 이상 제공)</td><td colspan="2">월 1회 이상</td></tr><tr><td>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td><td colspan="2">연 1건 이상</td></tr><tr><td>8. 사전·사후 진단 검사</td><td colspan="2">연 2회</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등)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월4회 (주1회)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월4회 (주1회)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 불가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최소 20분 이상 제공)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등)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월4회 (주1회)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월4회 (주1회)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 불가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최소 20분 이상 제공)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 1~8.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사진 등)관리 필수 ※ 1일 1회, 월8회+α 서비스 제공(클래식 이론 및 실기 월4회+정서순화프로그램 월4회+α 제공) ※ 일반연주회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참여 아동 합주 등은 서비스 제공 후,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3단계: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4단계: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척도 (선택) 대상자의 심리정서안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K-PRC: 한국아동용인성평정척도/ K-CBCL: 아동 청소년행동평가척도/ CDI: 아동우울척도/ BECK우울척도/ RCMAS: 아동불안척도/ 사회성 검사, 또래 및 대인관계 검사/ 투사검사(HTP: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KFD: 가족동적화검사)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심리정서안정 및 자아존중감 10% 향상 ② 일반연주회 2회 개최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3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진행해야 함)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 제공하는 서비스(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첼로) 이론 및 실기 매뉴얼과 정서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씩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④ 인터넷 과의존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사업코드: 04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연령: 만 18세 이하 ■ 가구특성(육구기준):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으로 증빙자료로 ①, ② 중 제출 ※ 청주시 고지에 따라 스마트폰과의존척도 및 인터넷중독진단 검사 결과 제출 ① 이용자 자기진단과 부모 또는 학교 교사 등의 관찰자 검사지 * 관찰자 검사지에 관찰자 서명 확인 필수 ②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발급한 상담확인서 ■ 우선순위 : 해당 없음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인터넷과의존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기본서비스: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 충청북도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 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은 중급과정 이상 이수(각 과정 Ⅰ,Ⅱ,Ⅲ 모두 수료 필수)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②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심리검사: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집단규모 1:1)	연1회	120분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1일	480분
		3. 심리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방문 상담 가능 - 단,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제공 사전에 제공기관이 청주시장 승인 후 서비스 진행 -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집단 활동 및 대체활동 불가능 시 심리상담으로 대체 ※ 개인상담(월 4회 중 2회 이상),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월4회 (주1회) : 6개월	50분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1일	480분
		5. 부모 상담 및 교육(※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1회/ 최소 10분 이상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 관 리	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십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월4회 (주1회) : 3개월	50분
		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월4회 (주1회) : 3개월	
	부 가 서 비 스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월1회	
	※ 부모상담 및 교육은 월 1회(대면상담, 전화상담 인정): 단,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불가 ※ 워크숍, 캠프 및 체험활동: 활동 증빙(사진자료)을 이용자 파일에 첨부하여 비치함 ※ 기본서비스의 심리상담(6개월)과 대체활동의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서비스(3개월)는 서비스기간 내 혼합 제공 가능.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3개월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계획 설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서비스 종료 시 심리검사 의무 실시)
효 과 성 검 증	■ 시점 :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척도 (선택)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S-II 척도)/ 유아용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찰자 척도/ 자기통제척도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심리정서안정 및 자아존중감 향상 ②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게임행동 종합 진단 : 정상수치 -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게임 행동 종합 진단 척도 등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규모: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 1인 개인상담(월 4회 중 2회 이상), 집단상담(4인 이내) - 워크숍 및 캠프 : 제공인력 1명이 대상 6가구(아동청소년 및 부모 형제 자녀)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 제공인력 1명당 6인 이내의 이용자이용(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재가방문형: 은둔형 청소년에 한해 청주시장 승인 후 가능(단, 부모입회 또는 제공인력 2인1조인 경우만 서비스 진행 가능) ■ 결제방법 ※ 첫째 달 심리검사 진행 시 심리검사(1회)+심리상담(4회) 총 5회 결제 ※ 워크숍 및 캠프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심리상담 1회 생략 • 첫째 달 워크숍 진행 시 심리검사(1회)+워크숍(1회)+심리상담(3회) 총 5회 결제 • 둘째 달 워크숍 진행 시 워크숍(1회)+심리상담(3회) 총 4회 결제 • 캠프 진행 시 캠프(1회)+심리상담(3회) 총 4회 결제 ※ 부모상담 및 교육은 월 1회(대면상담, 전화상담 인정): 단, 제공기록지 작성/ 결제 불가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대체 야외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⑤ 우리아이 행복충전 서비스 [사업코드: 1303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학습습관 형성지원, 심리안정을 위한 멘토, 생활습관형성지원, 정서순화프로그램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7세~만 15세 이하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다문화조손·한부모·소년소녀가정 3. 차상위 계층 4. 건강보험료 낮은 순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제 공 인 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26,000원</td><td>14,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 - 학습습관형성지원서비스(숙제, 수학, 한글 등) - 심리안정을 위한 정신적인 멘토서비스 - 생활습관형성지원 서비스(개인위생, 예절) - 정서순화프로그램(체육활동, 음악활동 등) 예체능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 생일 축하메시지 및 축하선물 전달 서비스) </td><td>월4회 (주1회)</td><td>90분</td></tr></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자존감·사회성 등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육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종결프로그램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 학습습관형성지원서비스(숙제, 수학, 한글 등) - 심리안정을 위한 정신적인 멘토서비스 - 생활습관형성지원 서비스(개인위생, 예절) - 정서순화프로그램(체육활동, 음악활동 등) 예체능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 생일 축하메시지 및 축하선물 전달 서비스)	월4회 (주1회)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 학습습관형성지원서비스(숙제, 수학, 한글 등) - 심리안정을 위한 정신적인 멘토서비스 - 생활습관형성지원 서비스(개인위생, 예절) - 정서순화프로그램(체육활동, 음악활동 등) 예체능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 생일 축하메시지 및 축하선물 전달 서비스)	월4회 (주1회)	90분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자기유능감 척도/ 또래 및 대인관계 척도/ 자기표현 척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척도/ 성취동기검사/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표준화창의력 검사 토란스 TTCT: 도형B/ 확산적 사고 척도 A형, B형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또래 및 대인관계, 자기표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지수 향상 ② 성취동기,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창의력, 확산적 사고 지수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기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5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⑥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사업코드: 1305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7세~만 15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소년소녀가장아동세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 일반 가정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1. 소년소녀가장아동 2.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제 공 인 력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이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학습모듈은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기본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회당 90분)	월3회 (주1회)	120분
	부가 서비스	부모 상담 및 교육(※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1회/ 최소 10분 이상	
※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진행 시, 반드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내용이어야 함 = 체험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체험활동이어야 함 ※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중학생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및 실시 ※ 체험프로그램은 유료 상품(체험비 및 입장료 등) 실시 계획을 포함할 것 ※ 등록 시군이 승인한 정식 제공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인턴 투입 불가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자기유능감 척도/ 또래 및 대인관계 척도/ 자기표현 척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척도/ 성취동기검사/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표준화창의력검사 토란스 TTCT: 확산적 사고 척도 A형, B형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또래 및 대인관계, 자기표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지수 향상 ② 성취동기,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창의력, 확산적 사고 지수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 비 스 제 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체험통합형(1:12이하):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 1:1~12인 이하 * (체험) 1:1~12인 이하 - 학습모듈(1:6이하): 기관방문+집단 활동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매 여행 시 결과 보고: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식사, 차량, 보험 증빙 서류 일체 관리 자료(사진 및 영수증) 보관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상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7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 [사업코드: 1419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공동)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교과과목 중 '한국사'와 연결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을 접목한 살아있는 역사체험 제공 및 집단 활동을 통한 신체적·사회적 능력 배양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9세~만 13세 ■ 가구특성(욕구기준): 해당 없음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1. 저소득가정 2.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 인문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 1년 이상인 자 ○ 역사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 또는 역사학 분야 교육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문화해설사, 역사문화지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26,000원</td><td>14,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3">기본 서비스</td><td>1. 역사 및 사회교육(왕조, 문화재, 선조들의 생활 이해)</td><td rowspan="2">월3회</td><td rowspan="2">120분</td></tr><tr><td>2. 탐험할 유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조사활동(자료수집, 분류, 해석, 계획)</td></tr><tr><td>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td><td>월1회</td><td>480분</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역사 및 사회교육(왕조, 문화재, 선조들의 생활 이해)	월3회	120분	2. 탐험할 유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조사활동(자료수집, 분류, 해석, 계획)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48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역사 및 사회교육(왕조, 문화재, 선조들의 생활 이해)	월3회	120분																					
	2. 탐험할 유적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조사활동(자료수집, 분류, 해석, 계획)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48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자기역량지각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발달·행동평가(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실시) - 2단계: 아동청소년의 자율성 성장을 위해 본인들이 활동을 직접 계획해 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조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기역량지각 ① 자기역량지각에 의한 향상도 20% 향상: 자기역량지각 척도 검사 실시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서비스 만족도 및 이해 향상 정도 80점 이상: 목표성취도 평가 만족도 및 이해도 조사 / 기타 검증된 검사 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2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 - (기본/체험) 1:1~12인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매 여행 시 결과 보고: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식사, 차량, 보험 증빙 서류 일체 관리 자료(사진 및 영수증)보관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체험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⑧ 아동청소년 희망돌봄서비스 [사업코드: 15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기초 돌봄이 취약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5세~만 15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맞벌이 저소득가정 - 부모 모두의 고용확인서 제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한부모가정 경우 부(父)또는 모(母)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질병*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하여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질병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자”라 함은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된 자임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이하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 “자격기본법” 제17에 의한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2016년 9월 1일 이전 등록된 제공인력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유예(2017년1월1일부터 적용)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제 공 인 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22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200,000원</td><td>4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2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200,000원	4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2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200,000원	40,00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자아개념, 꿈과 진로, 편지·일기·독후감 지도, 동화 스토리텔링 등 ○ 대인관계 및 예절교육: 예절교육, 협동교육, 정보윤리 의식교육, 정리정돈, 인성·사회성 지도, 개인정보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아동권리 및 안전교육 등 ○ 정서행동지도: 음악지도, 미술지도, 음악감상, 습관·행동지도, 정서발달 지도 등 ○ 일상생활 관리 및 학습지도: 정리정돈, 위생건강관리, 생활안전지도, 숙제·독서지도, 교과학습지도 등	월8회 (주2회)	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도(변화도)/ 학교적응/ 학교과제물 달성/ 학교성적 향상도/ 또래관계증진, 가족관계 증진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학교과제물 달성, 학교성적 향상, 또래관계 증진, 가족관계증진 20% 이상 향상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2인 이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⑨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코드: 1605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공동)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체질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5세~만 15세 이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제천시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가구특성(육구기준):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BMI 지수 16% 이하)도 포함 가능 *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내의 아동 ■ 우선순위: 1. PAPS등급 순 2. 비만지수 높은 순 3. 저소득순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초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93,000원 <table><thead><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head><tbody><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83,000원</td><td>1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75,000원</td><td>18,000원</td></tr><tr><td>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65,000원</td><td>28,000원</td></tr><tr><td>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td><td>56,000원</td><td>37,000원</td></tr></tbody></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83,000원	1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75,000원	1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65,000원	28,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56,000원	37,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83,000원	1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75,000원	1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65,000원	28,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56,000원	37,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12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내용 (필수)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교육 및 상담서비스는 월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 주1회 또는 주2회 선택운영(주1회: 회당 120분/ 주2회: 회당 60분)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2단계: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3단계: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이용자에게 제공) 4단계: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5단계: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부모교육 실시 6단계: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7단계: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비만도 검사(체성분 검사): 체성분 분석기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 활용 가능 (선택) 청소년 체력검사(CRT)/ 신체적 자기효능감/ 근육량, 체지방 및 성분 분석(체성분 검사)/ 종합체력검사(physical test)/ 전신 체형분석(Gait view)/ 근력도수검사: MMT(muscle measure test)/ 관절의 가동범위: ROM(range of motion)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성장촉진, 체력 증진 지수 향상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타 등록 조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6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유 의 사 항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0 키즈드림 성장프로그램 [사업코드: 1606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신체리듬, 조성, 성장운동, 레크리에이션)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4세~만 6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아동건강관리서비스(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포함) 3. 그 외 저소득층 유아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츠 의학·운동처방·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운동지도 분야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유아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관련 기관 유경험자 포함)로 아동관련 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레크리에이션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로 아동관련 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제 공 인 력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99,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89,000원</td><td>1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89,000원	1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89,000원	1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1. 신체성장운동(성장마사지, 유아체육-요가, 율동, 기구운동) 2. 신체조성운동(체형교정운동, 성장 촉진운동) 3. 신체리듬운동(리듬체조, 유연성 발달 도모) 4. 레크리에이션(유아 레크리에이션)</td><td>월4회 (주1회)</td><td>60분</td></tr></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신체성장운동(성장마사지, 유아체육-요가, 율동, 기구운동) 2. 신체조성운동(체형교정운동, 성장 촉진운동) 3. 신체리듬운동(리듬체조, 유연성 발달 도모) 4. 레크리에이션(유아 레크리에이션)	월4회 (주1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신체성장운동(성장마사지, 유아체육-요가, 율동, 기구운동) 2. 신체조성운동(체형교정운동, 성장 촉진운동) 3. 신체리듬운동(리듬체조, 유연성 발달 도모) 4. 레크리에이션(유아 레크리에이션)	월4회 (주1회)	6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서비스 제공 전 개인별 건강요인 측정(체성분 검사, 체력 측정, 자세 측정) * 측정에 대한 개인별 평가 및 상담, 운동처방,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 계획 - 2단계: 대상별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 후 분기별로(3개월/1회) 개인별 건강요인 측정(체성분 검사, 체력측정, 자세 측정) - 4단계: 2차 측정에 대한 개인별 평가 - 5단계: 개인별 상담을 통한 운동처방 및 사후 관리 제시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부모용) (필수) 체력측정 ① 체성분 검사: 신체성장률, 체지방율 2%이상 향상 ② 근력, 균형감각, 순발력, 유연성, 민첩성, 근지구력, 유산소 운동능력 10%이상 향상 - 체력측정, 자세측정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③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5% 이상 만족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20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1 가족관계 형성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1607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중재서비스를 위해 부모, 형제 등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5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가구특성(육구기준): 만 5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 아동·청소년(추천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위센터장(위클래스), 청주시 아동보육과장(드림스타트팀) 추천 아동·청소년(추천서) 3. 의사 진단서(혹은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4. 임상심리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단, 임상심리사 경력 5년 이상 가능(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등록된 임상심리사 추천서는 불가)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상담, 심리, 가정가족 관련학 전공자로서 학사는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1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가족심리, 놀이심리, 미술심리, 음악심리 민간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제 공 인 력	○ 집단활동 및 대체활동(부모·자녀 힐링프로그램, 가족관계 형성 캠프) 제공인력 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심리, 놀이심리, 미술심리, 음악심리, 레크리에이션, 체험 및 캠프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레크리에이션, 체험 및 캠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체험 및 캠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2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98,000원</td><td>22,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76,000원</td><td>44,000원</td></tr><tr><td>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54,000원</td><td>66,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98,000원	22,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76,000원	44,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54,000원	66,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98,000원	22,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76,000원	44,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54,000원	6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기본서비스 1~3. 중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서비스	• 사전검사: 성격,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 상담을 통해 문제 및 욕구 파악(※ 최초 가족상담 시 병행)	최초 서비스 시 1회	60분
	1. 가족상담(관계 형성 등) (※ 5인 이하: 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형제자매)	월1회	60분
	2. 자녀상담 및 치료: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자존감 향상 및 의사소통 향상 등	월1회	60분
	3. 부모상담	월1회	60분
집단 활동 및 대체 활동	4. 집단 활동: 부모·자녀 힐링 프로그램 - 놀이, 미술, 음악, 레크리에이션, 기타 힐링프로그램	월1회	60분
	5. 대체활동: 가족관계 형성 캠프 ※ 캠프는 부모·자녀 힐링프로그램의 대체활동으로 해당 월 부모·자녀 힐링 프로그램과 기본서비스 1회분 생략	총1회/1일	480분
기본서비스	• 사후검사: 효과성 검증 및 간담 - 사전검사와 동일 지표 사용/ 기관의 간담 및 평가결과 보고서 첨부 ※ 사후: 최종 가족상담 시 병행	최종 서비스 시 1회	60분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 설정 ▶ 사전검사
- 3단계: 목표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5단계: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상담

효과성 검증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사전, 사후검사 시 필히 아래 각 항목별 1개 이상의 동일척도 사용(※3개 이상의 척도 사용)

① 아동 우울감 및 존중감 검사: ADHD평정척도(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 아동우울척도(CDI), 벡(BECK)의 우울척도(BDI), 자아존중감 척도(RSE)등 활용

② 부모스트레스 등: 부모양육효능감검사(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부모양육태도검사(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양육스트레스 척도(PSI: Parenting Stress Index) 등 활용

③ 가족상호관계성 검사: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 평가 척도, 가족관계 척도, 가족기능검사(FACES III) 등 활용

※ 척도점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상담 및 보고서 작성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제공 유형: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집단규모

- 가족상담: 제공인력 1명이 대상 1가구(대상 아동청소년 및 부모, 형제자매) 상담

- 자녀상담 및 치료: 제공인력 1명이 대상 아동청소년 1명 상담

- 부모상담: 제공인력 1명이 대상 부모 상담

- 부모자녀 힐링 프로그램: 최대 4가구(대상 아동청소년 및 부모, 형제자매)이하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형성 캠프: 제공인력 1명이 대상 6가구(아동청소년 및 부모, 형제자매)

※ 1회 제공 가구 수: 최대 10가구(1가구 기준 2~5명)서비스 제공(※ 단, 기본상담자격을 가진 보조인력 지원 시, 1명당 2가구 이하로 추가 제공 가능: 대체활동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이 결제/ 캠프 결과보고서 내 제공인력 및 보조인력의 캠프 활동사진이 명확히 확인될 시 적용)

■ 기본서비스 및 대체활동 실시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결과보고서 등은 제공기록지 하단에 첨부)

※ 증빙사진 기준: 각 주제별 활동사진/ 제공인력, 보조인력, 이용자가 모두 포함된 사진 필히 포함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최초, 최종회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시 사전, 사후검사 병행(필히 실시)

■ 사전-사후검사에 따른 효과 및 평가/ 대상자 평가 및 부모와 간담내용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보관(해당 회차 가족상담 제공기록지 하단에 첨부)

■ 가족관계형성 캠프 시 결과자료 관리 철저: 대상자, 제공인력, 캠프장소, 식사, 차량, 보험증빙서류 등 일체 관리자료(증빙사진 및 영수증)보관

■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가족관계 형성 캠프 시행

- 해당 월 부모자녀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체 시행

※ 캠프는 부모자녀 힐링 프로그램의 대체활동으로 해당 월 힐링프로그램과 기본서비스 1회분 생략(총 2회분 생략)

• 캠프 제공 후 2회차분 결제(A등급인 경우 정부지원금 99,000원, 본인부담금 11,000원)

• 캠프 운영 기준(당일캠프) : 최소 8시간 이상(시작시간: 캠프장소 도착시간 기준 / 종료시간: 캠프 장소를 떠나는 시간 기준) / 참여가족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가입)

• 주의사항: 보고서,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자료 부재 시 캠프활동 인정 불가

■ 가족관계 형성 캠프는 캠프일 기준 5일 전 참여인원 확정(서면으로 참석여부 확인(서명))

	- 이용자가 캠프를 취소한 시기에 따라 바우처 결제 등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 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 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처리(바우처 카드(정부지원금)는 결제 불가) ■ 캠프는 반드시 진행(임의 미진행 불가/ 이용자가 캠프를 원하지 않을 시 확인서 서명 받고 미진행 가능(단, 기본서비스로 변경 진행 불가·결제 불가)/ ※ 기관에서 임의로 미진행 시 해당 월 모든 서비스 인정 불가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2회 이상(최초, 중간/ 대장 구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화재, 상해보험 가입/ 안전관련 보호자 동의서(자유 형식) 2. 가족관계 형성 캠프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여행자보험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2 Go And Go, Dream 제천 유소년야구단 [사업코드: 1608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동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8세 ~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사항 없음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3. 학교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추천서 동봉)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 공 인 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 해당되는 체육지도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제외)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 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 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5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35,000원</td><td>15,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35,000원	15,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35,000원	15,00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3">기 본 서 비 스</td><td>1. 유소년야구단 정기훈련을 통한 인성 및 사회성 발달 - 순발력강화, 유연성체조, 수비자세 기본기 훈련, 캐치볼, 스윙, 타격자 세 등 기본기 훈련(※ 필요시 전국대회 특별훈련 병행)</td><td>월4회 (주1회)</td><td>120분</td></tr><tr><td>2. 유소년야구단 프로야구경기 관람 - 프로야구경기관람을 통해 프로야구의 간접 경험기회 제공</td><td>연2회</td><td>480분</td></tr><tr><td>3. 유소년야구단 가족간담회 - 가족간담회를 통한 사업 전반적인 이해 및 욕구반영</td><td>연2회</td><td>120분 이내</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유소년야구단 정기훈련을 통한 인성 및 사회성 발달 - 순발력강화, 유연성체조, 수비자세 기본기 훈련, 캐치볼, 스윙, 타격자 세 등 기본기 훈련(※ 필요시 전국대회 특별훈련 병행)	월4회 (주1회)	120분	2. 유소년야구단 프로야구경기 관람 - 프로야구경기관람을 통해 프로야구의 간접 경험기회 제공	연2회	480분	3. 유소년야구단 가족간담회 - 가족간담회를 통한 사업 전반적인 이해 및 욕구반영	연2회	120분 이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유소년야구단 정기훈련을 통한 인성 및 사회성 발달 - 순발력강화, 유연성체조, 수비자세 기본기 훈련, 캐치볼, 스윙, 타격자 세 등 기본기 훈련(※ 필요시 전국대회 특별훈련 병행)	월4회 (주1회)	120분																							
	2. 유소년야구단 프로야구경기 관람 - 프로야구경기관람을 통해 프로야구의 간접 경험기회 제공	연2회	480분																							
	3. 유소년야구단 가족간담회 - 가족간담회를 통한 사업 전반적인 이해 및 욕구반영	연2회	120분 이내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 설정 ▶ 사전검사 - 3단계: 목표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5단계: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상담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사전, 사후검사 시 필히 아래 각 항목별 동일척도 사용 ① 아동의 체지방량 감소 및 골격근량 증가: 인바디 측정 → 표준 3kg± 달성 ②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20% 향상 -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검사(DHQ): 스트레스 감소 ※ 척도점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상담 및 보고서 작성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제공 유형: 제공인력 1인:10인 이하의 이용자 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 ※ 단, 계임연습 시, 2인:20인 이하 서비스 제공 가능(*실내에서 제공 불가)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다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2회 이상(최초, 중간/ 대장 구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화재, 상해보험 가입/ 안전관련 보호자 동의서(자유 형식) 2. 유소년야구단 프로야구경기 관람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여행자보험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3 유·아동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코드: 2310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만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서 지원 및 학업 지원으로 전인·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하 ■ 가구특성(육구기준): 충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정 ■ 우선순위: 1.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 유관기관추천자(저소득층 우선)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 2016년 9월 1일 이전 등록된 제공인력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유예(2017년1월1일부터 적용)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1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90,000원</td><td>2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90,000원	2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90,000원	2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이용기간 중 자격 변동(미취학아동 → 취학아동): 보호자와 상담 후 지속 이용 가능 (단, 이용자와의 합의 및 동의서류를 구비하고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미취학 아동	- 한글교육 및 그림책읽기 프로그램 - 문제해결력 향상을 통한 학교적응력 높이기 프로그램		월8회 (주2회)	60분
		- 가족연계프로그램(공연관람 및 부모참여행사 등)		반기별 1회	120분
		- 부모상담(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결제 미포함)		월1회	최소 10분 이상
	취학 아동	- 학습지도(기초/특성화학습)		월8회 (주2회)	60분
		- 심리·정서지원(부모 및 아동상담 포함)		월1회	120분
		- 가족연계프로그램		반기별 1회	120분
※ 미취학 아동: 월9회+α [서비스 제공(한글교육 등 월8회+부모상담 월1회)+α(가족연계프로그램)] * 1회당 결제금액: 190,000원/8회=23,750원 ※ 취학 아동: 월9회+α [서비스 제공(학습지도 월8회+심리·정서지원 월1회)+α(가족연계프로그램)] * 1회당 결제금액: 190,000원/9회=21,110원(마지막회 결제금액: 21,120원) ※ (미취학) (취학) 가족연계프로그램은 기본서비스(2회분) 대신 제공하고 결제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통합지원 서비스 실시 - 4단계: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미취학] 영유아전인발달검사(예, K-DST, K-CDI 등) [취학] 초등창의적특성검사(Korean-Creativity Traits Checklist) ① 전인발달 성취도 10%이상 향상 ② 창의적 특성 성취도 10%이상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향상 ④ 서비스만족도조사: 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록 조 및 서 비 스 제 공 관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3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종결일지 작성·보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4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 [사업코드: 2902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승마교육을 통한 지역아동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발달 증진도모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5세~만 9세 이하 ■ 가구특성(육구기준): 괴산군 거주자 ■ 우선순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존 이용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 2. 통합사례관리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의 대상자 중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승마장)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등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재활승마지도사 ○ 한국마사회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승마지도사 ○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단,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2인중 1인은 반드시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20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80,000원</td><td>2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계획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1. 준비하기(10분): 말과 정서적 교감 및 신뢰관계형성, 이론교육 2. 승마교육(20분): 승마 기술교육 ※ 이용자의 특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시 관련학과 재학생 등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제공인력 2명을 보조함) 3. 마무리하기(10분): 회차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개인별 부모상담</td><td>월4회 (주1회)</td><td>40분</td></tr><tr><td>부가 서비스</td><td>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방학, 휴일 등을 이용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제공</td><td colspan="2">선택적 제공</td></tr></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준비하기(10분): 말과 정서적 교감 및 신뢰관계형성, 이론교육 2. 승마교육(20분): 승마 기술교육 ※ 이용자의 특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시 관련학과 재학생 등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제공인력 2명을 보조함) 3. 마무리하기(10분): 회차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개인별 부모상담	월4회 (주1회)	40분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방학, 휴일 등을 이용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제공	선택적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준비하기(10분): 말과 정서적 교감 및 신뢰관계형성, 이론교육 2. 승마교육(20분): 승마 기술교육 ※ 이용자의 특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시 관련학과 재학생 등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제공인력 2명을 보조함) 3. 마무리하기(10분): 회차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개인별 부모상담	월4회 (주1회)	40분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방학, 휴일 등을 이용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제공	선택적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우선 순위대상 및 선착순서 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3단계: 이용자의 신체 및 사회성 등 사전검사 실시하여 현재 상태 파악 - 4단계: 이용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승마프로그램 실시 - 5단계: 서비스 종료 후 사후검사 실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부모용) ※척도점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상담 및 보고서 작성 (필수) 신체 발달 및 체력측정, 사회성 발달 측정 ① 기초신체검사, 기능평가검사: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5%이상 향상 ② 사회성 발달검사: 사회성 발달 증진 5%이상 향상 ③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5% 이상 향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2인:1인의 이용자:1필(馬), 기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5]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사업코드: 9904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과학실험 교육프로그램, 토론·발표회·체험활동 서비스를 통한 과학학습 증진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7세~만 13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취약가정 2. 다문화, 새터민가정 아동 3. 한부모, 조손가정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연과학, 공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과학실험 관련 과목 이수자 ※ 과학실험 관련 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확인 - 과학관련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과학교육학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26,000원</td><td>14,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	14,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과학실험 교육프로그램, 토론, 발표회, 체험활동 서비스를 통해 과학학습 증진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2">기 본 서 비 스</td><td>과학실험교육프로그램</td><td>월3회 (주1회)</td><td>120분</td></tr><tr><td>체험활동(토론, 발표회 포함) ※ 토론, 발표회는 단일프로그램으로 제공 불가</td><td>월1회</td><td>480분</td></tr></table> ※ 과학실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반드시 토론, 발표회,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내용이어야 함 = 체험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체험활동이어야 함 ※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및 실시 ※ 체험프로그램은 유료 상품(체험비 및 입장료 등) 실시 계획을 포함할 것 ※ 등록 시군이 승인한 정식 제공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나 인턴 투입 불가(체험활동 포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과학실험교육프로그램	월3회 (주1회)	120분	체험활동(토론, 발표회 포함) ※ 토론, 발표회는 단일프로그램으로 제공 불가	월1회	48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과학실험교육프로그램	월3회 (주1회)	120분																			
	체험활동(토론, 발표회 포함) ※ 토론, 발표회는 단일프로그램으로 제공 불가	월1회	48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자기유능감 척도/ 또래 및 대인관계 척도/ 자기표현 척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척도/ 성취동기검사/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표준화창의력검사 토란스 TTCT: 도형B/ 확산적 사고 척도 A형, B형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또래 및 대인관계, 자기표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지수 향상 ② 성취동기,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창의력, 확산적 사고 지수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2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체험 활동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	--

16 꿈꾸는 요리아카데미 [사업코드: 9906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보고, 만들고, 맛보는 활동을 통해 편식 예방 및 바른 식습관 형성과 요리활동을 통해 감성발달 및 정서적인 안정감 도모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6세~만 13세 ■ 가구특성(욕구기준): 저소득층 가구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3. 그 외 저소득층 아동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요리교실 자격기준 : 아동요리지도사(민간자격증) *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 '아동요리지도자 1, 2급 인정 가능' - 아동상담 및 독서지도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2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08,000원</td><td>12,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08,000원	12,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08,000원	12,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이 흥미로워하는 요리활동을 통해 감성발달 및 정서적인 안정감 도모 - 보고, 만들고, 맛보는 활동을 통해 편식을 예방하고 바른 식습관 형성 - 지역특화사업인 한방 및 우리 전통음식 오감 교육을 통한 민족정체성 함양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요리교실 ※ 대상(유아와 아동청소년)에 맞는 요리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식재료를 통한 감성발달 요리활동 - 우리나라 맛, 멋(된장, 고추장 등) 전통음식 요리활동, 역사 및 예절 배우기									월4회 (주1회)	120분				
		2. 요리관련 도서제공, 그림책 읽어주기									월1회					
	부 가 서 비 스	영양을 고려한 간식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설명회를 통해 서비스 내용 전달 - 3단계: 요리교실, 현장학습, 집단상담·개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4단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 - 5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자기유능감 척도/ 또래 및 대인관계 척도/ 자기표현 척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척도/ 성취동기검사/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검사/ 한국표준화창의력검사 토란스 TTCT: 도형B/ 확산적 사고 척도 A형, B형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또래 및 대인관계, 자기표현,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사회성 지수 향상 ② 성취동기, 진로준비, 진로성숙도, 창의력, 확산적 사고 지수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공통 및 필수 사전·사후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선택사항의 척도로 검사할 수 있음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25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	--

[17]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사업코드: 9907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공동)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감소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만 1세~만 5세 아동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가구특성(육구기준): 만 1세~만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3. 일반가정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명에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명칭 포함)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영유아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8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0,000원	40,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진단검사	- 성격유형 검사 서비스(사전)	연1회	
		- 양육스트레스 검사(사전, 사후)	연2회	
		- 아동발달 기초검사(사전, 사후)	연2회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가족역할 정립 서비스 -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서비스	월4회 (주1회)	20분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40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보고서: 월 1회		

※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실시 후, 월 4회 결제
- 단, 진단검사는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
- 성격유형(사전 1회), 양육스트레스, 아동발달 기초검사 3가지를 실시하되, 사전 1회/ 사후 1회= 총 2회만 결제 가능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 2단계: 사전검사 실시(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아동발달 기초검사)
- 3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 5단계: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아동발달 기초 검사)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아동: 아동발달 기초검사(※ ①에서 제시하는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
①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발달(한국유아발달검사 K-DIP, 발달선별검사 DENVER-II, 월령별 아동발달과업 달성정도 측정 PDQ-II),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 70%이상 향상
② 부모양육태도(부모양육태도검사(MBRI), 부모우울성검사(CES-D), 부모-자녀 유대관계척도, 투사검사(HTP) 20%이상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부모 서비스만족도 80%이상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가족 [주 양육자(부모, 조부모, 위탁가정)+아동, 3인 이내] 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8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사업코드: 9909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x	x	x	x	x	x	x	○	x	x	x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에 진로인식의 성숙 및 진로탐색(결정)을 지원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계획 수립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12세~만 19세 ■ 가구특성(육구기준): 진로컨설팅 육구가 있는 청소년 ■ 우선순위: 1. 저소득 2. 조손가정 3. 학교 밖 청소년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교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중 진로상담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이상자 중 진로, 라이프코칭,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진로상담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제 공 인 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6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000원	16,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28,000원	32,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12,000원	48,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96,000원	64,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초기상담	서비스 욕구조사	*전반기 3개월 월4회 (주1회)	120분
	나의 이해 및 직업세계 이해	- 흥미의 이해, 적성의 이해, 가치관의 이해, 성격의 이 해, 대인관계, 나의 이해 종합 - 직업의 이해, 직업의 변화, 직업윤리, 직업 기초능력		
	학습전략 및 진로계획	- 학습전략, 학습기술(자기주도학습 능력평가/ 바른 학습 습관형성) - 진로 경로, 진로(진학)전략,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목 표, 진로사정, 진로계획	*후반기 3개월 월4회 (주1회)	120분
	부모교육 및 상담	- 진로지도 :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통한 진로지도, 변화하는 진로(진학)의 이해	서비스 기간 중 총 2회	120분
	진로선택 심리검사		서비스 기간 중 총 1회	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가족 개별 상담 : 초기상담(학생/학부모)-심리검사(Holland/MBTI)실시

• 서비스 욕구조사 및 사전설문지 / • 심리검사 해설, 진로문제 진단 및 상담목표 설정

- 2단계: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자기관리- 자아개념 형성 / • 직업 탐색 및 선호 직업에 따른 전공탐색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가 / • 학습습관 점검, 반복학습, 시간관리 등을 통해 학업성취 고취

• 부모와 자녀의 상담과정을 통해 진로계획 수립

- 3단계: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필수: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진로성숙도, 진로 자기계획서

① 진로성숙도 20% 달성

② 진로 자기 계획서: 서비스 이용자 50% 이상 진로목표 수립

③ 부모와 이용자 서비스만족도 80%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및
서 비 스 제 공 관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5인 이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19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사업코드: 9913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치유농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18세 이하(※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록) 아동·청소년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3.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추천서 첨부) 4.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학교장,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 추천서 첨부)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슈퍼바이저] 1인 필수 - 사회복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재제공기관은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 가능)																								
제 공 인 력		[제공인력] - 치유농업사 2급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아동·청소년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의 이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 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의 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r><td>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tr><td>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td><td>120,000원</td><td>8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20,000원	8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20,000원	8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2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사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농작업 활동 - 농작물 심기, 기르기, 수확하기 등 2. 농장 동물 돌보기 - 먹이 주기, 동물과 산책, 쾌적한 환경 조성, 동물과 함께 하기 등 3. 기타 활동 - 수확 농산물 이용 요리, 목공 활동, 농장가꾸기 등	월4회 (주1회)	80분
	사전·사후 진단검사	연 2회	60분
부가 서비스	가족과 함께하는 농장 가든파티 -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 가족과 함께하는 가든파티	연 1회 이상	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 이용자 초기 상담 시 욕구 파악
 - 사전검사(이용자 및 보호자/ 강점·난점 설문지(SDQ-Kr) 부모·교사 보고형, 자기보고형)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상호 작성, 설명, 배부
 - 2단계: 서비스 제공 및 중간 점검 단계
 -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서비스 당일 2회 연속 제공 불가)
 - 서비스 중간 점검(분기별 1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기별 1회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 변화 파악/ 반기별 1회(서비스 제공 1/2시점) 이용자의 변화 정도,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 3단계: 서비스 종료 단계(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육구 조사)
 - 사후 검사(필수 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 이용자 및 보호자와 종결상담,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육구 조사(필요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 서비스 종료 통보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
(필수) 정서순화 측정 척도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타 등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6인 이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유 의 사 항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3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예: 예배당 및 개인 거주지 등) ※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타 기관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반환명령 참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 노인 대상 서비스별 내용 요약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서비스 (100115)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 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특화서비스'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 (190415)	실버세대가 제2인생을 설계하고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만5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250215)	경증치매 및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인지기능향상, 우울증 감소,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서비스 제공	만5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 서비스 (280115)	한방을 이용한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 스 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하 는 체력증진서비스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식사영양관리서비스 (991115)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없음

20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서비스 [사업코드: 10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특성(욕구기준): 노인자살 위험 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추천서(검사결과지 포함) 제출】 ① 관할지역 사회복지기관장의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보건소 소속 방문 건강관리사로부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복이용 불가 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저소득 우선																		
제공기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6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50,000원</td><td>1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50,000원	1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50,000원	1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 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전문상담원= 서비스 제공인력임)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td><td>월10회 이상 (대면 4회 이상)</td><td>60분</td></tr></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 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전문상담원= 서비스 제공인력임)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이상)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 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전문상담원= 서비스 제공인력임)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이상)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선택적 제공	
부 가 서 비 스		1. 가족교육: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 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등록, 상담, 선별검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전문상담 - 3단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 5단계: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노인우울척도 한국형(GDS-K) (선택) 우울증(CES-D)/ 한국형 단축 노인 우울척도/ Beck 우울척도/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고독감/ 자살 생각/ LOTCA-G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우울증, 자살사고 지수 감소, 고독감 완화 ②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인식 향상, 인지기능 강화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 비 스 제 공 관 련 유 의 사 항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

21 실버라이프케어 서비스 [사업코드: 1904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현대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버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55세 이상의 장노년층 ■ 가구특성(욕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연령순(저연령 우선) 2. 소득순(저소득 우선)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건강관리교육, 여가선용교육, 사회참여와 관련된 기관탐방 및 문화체험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라이프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인력(1인 이상 필수)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재무설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재무 설계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2018년 9월 1일 이전 등록된 제공인력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유예 (2019년 9월1일부터 적용) ※ 재무설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제 공 인 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9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71,000원</td><td>19,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71,000원	19,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71,000원	19,00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판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 1주 - 건강관리교육(스트레스, 뇌혈관, 당뇨 예방교육) - 여가선용교육(노래교실, 수지침, 공예교실)	월1회 (주1회)	120분
		• 2주, 4주 - 재무설계서비스(경제적 자립 및 자산관리, 실버창업교육/ 재취업교육) * 실버창업교육 또는 재취업교육 중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선택가능)	월2회 (주1회)	120분
• 3주 - 사회참여와 관련된 기관탐방(자원봉사센터, 건강관리공단 등) - 문화체험(지역축제 및 문화예술관람)		월1회 (주1회)	24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이용자별 노후 재무설계(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이용자별 라이프코칭 제공 - 4단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사업평가(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5단계: 사후관리(DB 구축)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노후준비도 ① 노후준비도 향상: 전체이용자 중 미래계획 준비 80%수립 ② 사회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 : 사회적 고독감 20% 감소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향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 비 스 제 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5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매 여행 시 결과 보고: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식사, 차량, 보험 증빙 서류 일체 관리 자료(사진 및 영수증)보관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테마관광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22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사업코드: 2502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50세 이상의 경증치매 및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인지기능향상, 우울증 감소,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50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신규서비스 이용자(이용 이력이 없는 신청자) 2. 소득수준(저소득순) 3. 고령자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인지행동지도사, 인지학습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인지재활교육사 자격취득 후, 성인 대상 임상경력 1년 이상인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후, 성인 대상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경력은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6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44,000원</td><td>16,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해당 결제방식(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도(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44,000원	16,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44,000원	1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강화서비스, 화상기법을 통한 정서기능 강화서비스, 뇌기능활성화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4">기본 서비스</td><td>1. 26개 인지영역*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지남력, 시지각, 공간지각, 운동실행, 시운동 조작성, 사고력</td><td>▶ 재가방문형 [개인]:월4회(주1회) ▶ 기관방문형 [집단]:월8회(주2회) [개인]:월4회(주1회)</td><td rowspan="3">개인: 90분 집단: 60분</td></tr><tr><td>2. 화상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td><td></td></tr><tr><td>3. 뇌기능활성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td><td></td></tr><tr><td>4. 정서, 인지,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5. 체력, 스트레스, 혈관건강 등의 신체건강 검사</td><td>연3회</td><td></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26개 인지영역*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지남력, 시지각, 공간지각, 운동실행, 시운동 조작성, 사고력	▶ 재가방문형 [개인]:월4회(주1회) ▶ 기관방문형 [집단]:월8회(주2회) [개인]:월4회(주1회)	개인: 90분 집단: 60분	2. 화상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3. 뇌기능활성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		4. 정서, 인지,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5. 체력, 스트레스, 혈관건강 등의 신체건강 검사	연3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26개 인지영역*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지남력, 시지각, 공간지각, 운동실행, 시운동 조작성, 사고력	▶ 재가방문형 [개인]:월4회(주1회) ▶ 기관방문형 [집단]:월8회(주2회) [개인]:월4회(주1회)	개인: 90분 집단: 60분																								
	2. 화상기법을 이용한 정서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3. 뇌기능활성 체조를 통한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제공																										
	4. 정서, 인지, 치매,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검사 5. 체력, 스트레스, 혈관건강 등의 신체건강 검사	연3회																									

	■ 서비스 제공절차 * 최초 사전검사 후, 6개월경과 시점 및 사후 검사를 통한 개별 맞춤형 치매예방프로그램 재설정을 통한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의 극대화 -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1차 상담 및 검사 - 3단계: 서비스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4단계: 6개월경과 시점 검사 실시 - 5단계: 개인별 프로그램 재설정 사후 관리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CIST(인지선별검사) 또는 LOTCA-G ① 정신건강 증진: 우울증 및 치매 감소, 인지기능 10% 강화 ② 정서적 안정: 자살생각 감소, 자아존중감 15% 증가 ③ 생활만족도 향상: 생활만족도 15점 증가 ④ 신체건강 증진: 체력,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 10점 증가 - CIST(인지선별검사), 치매검사, GDS-K(한국판 노인우울증 척도), SSI-Beck(자살생각척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척도, 일상생활수행능력(K-IADL) 등 검증된 검사 도구 추가활용가능 ⑤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⑥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MMSE-K의 무료사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대체 가능 척도 안내 → 인지선별검사(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는 국가 치매검진사업에 활용이 용이하고 인지기능 저하 변별력이 우수한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고안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임. (검사방식) 대상자와 1:1 문답 및 지필문항을 시행하며, 개인차가 있으나 대략 5~10분 정도 소요. 인지 저하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제공 * 도구 사용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은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유의사항을 지켜 사용을 권고함(중앙치매센터) (유의사항) - 검사지, 검사문항, 프로토콜, 검사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앙치매센터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하는 행위를 금지 - 검사지 사용에 앞서 인지선별검사(CIST) 수행교육 이수 * (이수방법)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메뉴 → 교육 → 개설 강좌에서 인지선별검사 수행교육(CIST)선택 ※ 중앙치매센터 회원 가입 필요
기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5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① 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1:5인 이하 월8회(주2회) 회당 60분 - 기관방문형(개인) 1:1인 월4회(주1회) 회당 90분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은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② 재가방문형 1:1인 월4회(주1회) 회당 90분 ※ 재가방문형은 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23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28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어르신들께 한방을 이용한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체력증진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없음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건강보험료 납부액 적은 순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운동지도, 체육지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3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15,000원					15,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한방 명상 기공체조, 힐링 요가							월8회 (주2회)	120분 이상	
			2. 건강강좌							분기별 1회	120분 이상	
			3. 한방건강관리: 한방 족욕 체험, 한방 테라피 등									
			4. 현장체험: 한방 및 건강과 관련된 체험									
		* 1일 2회 제공 불가(※ 건강강좌, 한방건강관리, 현장체험은 월8회 서비스에 포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종료 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실시) - 2단계: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건강기능상태(근력활동능력)척도 (선택) 체성분 검사/ 활동능력 기능상태/ 체력측정도구/ 간단신체수행검사(SPPB)/ 신체체력검사(SFT)/ 균형능력 (Berg balance scale)/ 시각적상사척도(VAS)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체성분 검사 종합평가 및 운동능력검사 1개 항목 이상 개선율 10% 이상 향상 ② 우울증 20%이상 감소 ③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④ 서비스만족도 80% 향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25인 이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현장 체험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24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코드: 991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독거노인, 노인부부(식사 준비를 도와 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 -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장기입원(6개월 이상)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 -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 복귀 대상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 ■ 우선순위: 1.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장기입원(6개월 이상) 후 지역복귀대상노인 2.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 대상 노인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 대상 노인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 공 인 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 (필수인력)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조리사 등 필요인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r><td>C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영양관리 서비스 시 결제 진행(월 1회)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C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140,000원	6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C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140,000원	6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사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어르신의 개인 특성(질환, 소화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일 1식 제공 및 영양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50분
		2. 식사지원: 어르신의 개인 특성(질환, 소화능력, 기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영양식 도시락 1일 1식 제공	월12회 (주3회)	
3. 영양관리: 사전영양 검사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1회)도움, 설거지,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월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

○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내용 요약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0101)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없음	없음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090415)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장애인: 140% 이하)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 (210215)	지적장애인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불안심리 해소 지원과 잠재력 발전을 위한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만18세 이상	없음	없음
장애인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280715)	맞춤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 및 신체의 기능 감퇴예방을 통한 자존감 증진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만4세 ~만70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없음

2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코드: 070101]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전국표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가구특성(육구기준):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해당 없음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경력은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20,000원 / (6개월)72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8,000원 (648,000원)	12,000원 (7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96,000원 (576,000원)	24,000원 (14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504,000원)	36,000원 (216,000원)		
	■ 결제원칙: 월별결제 방식(*실시간결제(회당 결제) 제외 사업)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6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tr><td>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td><td>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처리, AS 상담 등 </td><td> ■ 연중 렌탈 및 점검 - 정기점검 연2회 - 수시점검(제한 없음) ■ 1회당 : 60분 </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처리, AS 상담 등	■ 연중 렌탈 및 점검 - 정기점검 연2회 - 수시점검(제한 없음) ■ 1회당 : 6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처리, AS 상담 등	■ 연중 렌탈 및 점검 - 정기점검 연2회 - 수시점검(제한 없음) ■ 1회당 : 6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① 신체불편정도-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공통 및 필수 척도 예외적용 대상자 - 문식력이 낮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용자와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지적, 지체 등)은 보호자가 응답 가능								
기타 등 조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 이용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

26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코드: 0904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단,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제한 없음 ■ 가구특성(욕구기준):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복지법(약칭) 제3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척도(정신장애진단 척도)/대인관계변화 척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검사결과지 첨부)																		
제공기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제공인력		○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 지도 필수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80,000원</td><td>2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3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4회(회당 60분 이상)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1. 초기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td><td>월4회 (주1회)</td><td>60분 이상</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초기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월4회 (주1회)	60분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초기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월4회 (주1회)	60분 이상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td><td>월4회 (주1회)</td><td>60분 이상</td></tr><tr><td>부가 서비스</td><td>1. 가족교육: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td><td colspan="2">선택적 제공</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주1회)	60분 이상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주1회)	60분 이상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우울증 척도(GDS-K) (선택) GAF(전반적기능평가척도), 정신과적 증상척도, BPRS: 간이정신진단검사/ BAI: 불안척도/ SSI-Beck: 자살사고/ 정서적 안정관련 척도/ ADL: 일상생활정도 척도/ IADL: 일상활동능력 도구/ 일상생활 능력검사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GAF(전반적기능평가척도) 및 정신과적 증상척도 10% 향상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타 등 록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 사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이용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27 지적장애인 사회성발달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2102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지적장애인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불안심리 해소 지원과 잠재력 발견을 위한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구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정 3. 소득기준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음악심리, 놀이심리, 미술심리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제 공 인 력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80,000원</td><td>2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80,000원	2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심리측정검사(전문가관찰평가)서비스	연2회	50분
	2. 재능검사(전문가관찰평가)서비스		
	3. 대상자 심리지원서비스 및 재능발굴서비스	월4회 (주1회)	50분
	4. 부모교육상담 전문교육 서비스	연4회	100분
부 가 서 비 스	1. 서비스 대상자의 지적장애 극복을 위한 긍정마인드 교육 2. 제공기관 사회성 발달 공동체 프로그램 및 자존감 향상 서비스	연2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심리발달지원: 트라우마(Trauma)와 스트레스(Stress)를 파악한 후, 미술심리상담지원과 음악심리상담지원을
놀이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함

• 재능발달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 분야의 재능개발 탐색 및 성취도 경험, 특수분야 재능개발 노력
과 놀이학습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모니터링과 변화추이 데이터화

• 부모교육: 부모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자녀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가꾸어 주고, 차별화된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면서 특수 분야 인재로 육성 지원함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이해평가(MI-P/ HTP/ DiSC)

① 자아이해도 20%향상

② 대인관계 향상: 대인관계척도 사전사후검사

③ 가족관계 향상: 가족관계 척도 사전사후검사

④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⑤ 서비스만족도 70%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
비
스
제
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4인 이내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1:1인 상담, 집단상담 병행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28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운동서비스 [사업코드: 2807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시군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 및 신체의 기능 감퇴예방을 통한 자존감 증진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만 4세~만 70세 이하 ■ 가구특성(육구기준): 등록장애인(장애정도 무관) ※ 만 4세~만 18세 미만의 경우 청각, 언어장애는 제외 ■ 우선순위: 1. 지체장애인 2. 저소득 3. 저연령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로서 장애인 운동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 대상에 한함).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특수체육관련, 재활 및 운동처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장애인 운동처방, 재활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70,000원</td><td>30,000원</td></tr><tr><td>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70,000원	3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60,000원	4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70,000원	3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60,000원	4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개별 장애유형, 등급,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운동, 교정 및 재활운동, 문제행동 개선, 체력증진 운동 등의 특수 체육 실시 ※ 이용자 선택으로 1:1~1:30이내 진행	월8회 (주2회)	60분
		2. 보호자 상담 : 초기 및 분기별 보호자 및 대상자 상담실시(신체상태, 특징, 기대효과 등) ※ 매월 건강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결제 미포함)	월1회	최소 10분 이상
3. 종합건강검사(초기, 중간, 사후검사) : 종합건강검사 실시(체성분, 체격, 기능체력, 혈중지질, 스트레스 및 혈관 건강검사 체형 및 족압검사 등) ※ 검사결과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기록지와 함께 기관에 비치		연3회	5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개별 맞춤형운동 서비스 실시 - 4단계: 분기별 검사를 통해 대상자 변화를 확인 - 5단계: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일상체력평가 ① 신체기능회복(일상체력 평가) 항목별 10%향상 ② 건강기능 향상(체성분, 체격, 혈중지질, 혈관건강) 항목별 5%이상 개선 ③ 심리적 삶의 질 향상(스트레스) 10% 감소 ④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⑤ 서비스만족도 80%이상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 타 등 록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3인 이하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자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 서비스 제공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 노인·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내용 요약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060101)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문 돌봄여행서비스 제공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0415)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없음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200115)	거동이 힘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	만3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없음

29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사업코드: 060101]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전국표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가구특성(욕구기준):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 우선순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1~3등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기요양 4~6등급자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경력은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서류 등으로 확인)										
제 공 인 력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 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 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 (A+B)	180,000원			170,000원			150,000원			74,000원
	정부지원금 (A)	155,000원			145,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부담금 (B)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 상기 분류는 전문 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결제원칙: 이용 당일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평생1회(서비스 신청 후 3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회성 ■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사업 아님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기준 •이용자 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 안심통화 등	연1회	1박2일
	부 가 (대체)서 비 스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1회	당일 또는 2박3일
효 과 성 검 증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기 타 등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 시점: 서비스 제공 후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 (선택) 스트레스 및 우울증 또는 자아존중감 측정척도 중 택 1, 노인 생활만족감,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변화척도, 노후준비도, 노후준비 종합 진단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스트레스 및 우울증 3% 감소, 자아존중감 3% 향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인식, 사회성 발달, 활기찬 노후지수 향상 ② 서비스만족도 7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집단 규모: 집단활동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 1~3등급 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1:1~2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 4~6등급 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1:1~5인)			

유 의 사 항	- 상이등급 6~7급, 만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1:1~10인)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전문돌봄인력과 별도)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매 여행 시 결과 보고 :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숙박시설, 식사, 차량, 보험 증빙 서류 일체 관리 자료(사진 및 영수증)보관 ■ 종결일지 작성·보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연2회 / - 비상연락체계구축 / - 안전관련 보험가입 - 돌봄여행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 관련 서류) ①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비상연락망 ③보호자 동의서 ④여행자 보험 ⑤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3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코드: 0804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함															
제 공 인 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68,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51,200원</td><td>16,8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51,200원	16,8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51,200원	16,80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침술 불가)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노 인</td><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td><td rowspan="2">월4회 (주1회)</td><td rowspan="2">60분</td></tr><tr><td>장 애 인 및 기 타 질 환 자</td><td>-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 자극요법</td></tr></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 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월4회 (주1회)	60분	장 애 인 및 기 타 질 환 자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 자극요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 인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자극요법	월4회 (주1회)	60분								
장 애 인 및 기 타 질 환 자	- 전신안마 - 발마사지 - 마사지 - 운동요법 - 지압 - 체형교정 - 자극요법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서비스 만족도(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용: 기준정보 p.140) (필수) VAS: 시각적상사척도(※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활용 가이드북 활용 → 충북지원단 홈페이지 > 지원단 발간물) (선택) ① 사전·사후 검사대비 병의원 이용회수 20%이상 감소 ② 사전·사후 검사대비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관련 만족도 30% 이상 향상										
기 타 등 록 건 및 서 비 스 제 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 원칙) ① 기관방문형: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 안마사 1인당 주 40시간 이하 제공가능(매월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② 기관방문형 예외기준(재가방문형)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 제공기관은 이용자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함 - 교통이 불편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시군별 교통 불편지역(거리, 노선) 지정 요청 → 충북도 승인 시 가능 ▷ 기관방문형 예외기준(재가방문형)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제공 장소(이용자의 집)를 등록 시군에 반드시 신고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것(미 준수 시 행정처분)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31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재활서비스 [사업코드: 2001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거동이 힘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만 35세 이상 ■ 가구특성(육구기준):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 환자로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 [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모든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자 ※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①주민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증 ③최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④지역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또는 병원 진료기록서 및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중 택1 • 기초생활수급자: ①주민등록증 사본 ②지역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또는 병원 진료기록서 및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중 택1 ■ 우선순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존 이용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서비스 최초) 2. 독거여부 3. 저연령 4. 소득수준														
제 공 기 관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재활학(심리영역 재활학과 제외)관련 학과 졸업 후(전문학사 이상), 뇌혈관질환 운동재활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로 뇌혈관질환 운동재활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재활 및 운동처방관련 민간자격 소지자로서 의료기간 내 뇌혈관질환자 운동처방 및 재활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간: 재활 및 운동처방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의료기관 내 뇌혈관질환자 운동처방 및 재활분야 근무 기간 ▶ "자격기본법" 제17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 2018년 9월 1일 이전 등록된 제공인력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유예(2019년 9월1일부터 적용)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80,000원 <table><tr><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62,000원</td><td>18,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2,000원	18,00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2,000원	18,00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2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은 기본서비스 내 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사전, 사후, 중간점검 검사 실시 -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K* ADL), 관절가동범위(환측 상하지), 일상생활 체력, WHR(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체성분, 보행기능, 통증치 (VAS), 혈압 및 혈당검사, 심리정서상태(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 맞춤형 재활을 통한 1:1 재활서비스 실시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연3회 (초기, 6개월, 종료 시) 월4회 (주1회)	9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등록, 상담, 측정 및 검사, 욕구판정 - 2단계: 개인 맞춤형 재활계획 수립 - 3단계: 재활 서비스 제공 - 4단계: 분기별 측정·검사 및 모니터링 - 5단계: 분기별 측정·검사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계획 재설계				
효과성 검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환부 ROM 측정, 건강기능, 스트레스 및 통증검사 ① 사전사후 검사 대비 향상 - 환부의 기능회복 향상(환부 ROM 측정): 20% 증가 - 건강기능의 향상(체력, 보행기능 측정): 10% 증가 - 심리적 삶의 질 향상(스트레스, 우울감, 통증 검사): 10% 감소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서비스만족도조사: 만족도 80% 이상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기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유 의 사 항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 이용(재가방문형)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	---

○ 가족/기타 대상 서비스별 내용 요약

서비스명(사업코드)	서비스 목적/내용	연령기준	소득기준	중복제한
성인심리지원서비스 (991215)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만3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32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991215]

항 목		내 용																									
추진지역 (도 개발)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	×	×	○	×															
목	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연령: 만35세 이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 ■ 가구특성(욕구기준): 해당 사항 없음 ※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 대상자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연계를 의뢰한 자 2. 사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장애인가족 등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이용 불가) 3.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현재 이용 중인 자녀의 양육자(부모, 조부모 등)로서 MMPI-2, BDI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희망복지지원단,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성인상담, 가족상담 분야 임상경력이 20사례(100시간) 이상인 자(* 임상경력 증명서류 제출) ② 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학회발급 민간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 소지자로서 성인상담, 가족상담 분야 임상경력이 20사례(100시간) 이상인 자(* 임상경력 증명서류 제출) ※ 1사례= 5회기 이상 진행 ③ ‘자격기본법’상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로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분야 학위 취득 후 성인대상 심리상담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박사 6개월)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부모상담”은 경력인정 불가 ※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시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00,000원 <table><tr><th>등급별 가구특성</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r><td>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tr><td>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150% 이하)</td><td>120,000원</td><td>80,000원</td></tr></table>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150% 이하)	120,000원	80,000원
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150% 이하)	120,000원	80,00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이 결정)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 서비스 내용

서 비 스 구 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객관적: MMPI-2, BDI, STAI, PTSD척도 등 검사 도구 활용 - 주관적: HTP, KFD, SCT, Rorschach 검사 등 검사 도구 활용	사전·사후 각 1회	90분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월4회 (주1회)	50분

※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 사전검사

- 3단계: 목표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4단계: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5단계: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효 과 성 검 증

■ 시점: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종료일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① 심리수준(우울, 불안, 실패감, 상실감, 강박 등) 관련 척도

- 객관적: MMPI-2, BDI, STAI, PTSD척도 등 검사도구 활용

- 주관적: HTP, KFD, SCT,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단, HTP, KFD, SCT 등 주관적 검사를 활용할 경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객관적 검사를 추가
진행하여야 함

② Rog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기 타 등 록
조
건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 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 이내의 이용자이용(기관방문형)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

유 의 사 항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사업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통척도지

- | | |
|-------------|-------------------------|
| 1. 옥스퍼드 행복감 | 2. (단축형)행복감 |
| 3. 서비스 만족도 | 4. 서비스 만족도(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옥스퍼드 행복감

척도명	옥스퍼드 행복감	대상	청소년/성인
척도소개	■ 본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함		
채점방법 및 해석	■ 6점 척도, 총 29문항으로 구성 ■ 역채점 문항: 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 는 역으로 채점한 후 계산 ■ 점수는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한 평균으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함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장해진(2015). 청소년의 자기복합성과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내 인생에서 보람을 상당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잠에서 깨도 별로 쉰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에게는 대부분의 일들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일에 언제나 몰입하거나 전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인생은 좋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세상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내가 원했던 것과 했던 것에는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많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내 인생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내 시간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나는 정신적으로 늘 맑게 깨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내 인생의 의미와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나는 대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나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단축형) 행복감

척도명	단축형 행복	대상	아동·청소년 / 성인(공통)
척도소개	■ 전박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 서은국·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		
채점방법 및 해석	■ 5점 / 7점 척도, 총 9개 문항으로 구성 ■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삶의 만족	3	1, 2, 3
	긍정 정서	3	4, 5, 6
	부정 정서	3	7*, 8*, 9*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자기보고 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삶의 만족감은 개인적 요인(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과, 관계적 요인(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 등), 집단적 요인(학교, 가족,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를 측정하며, 긍정정서(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감정)와 부정정서(짜증, 부정, 무기력한 감정)를 측정함		
	■ 유미리(2021),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아동·청소년용)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번호를 골라 ○표 하세요. 솔직한 답이 가장 좋은 답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인 면에 대해 만족한다. [개인적인 면: 개인으로 이뤄낸 것, 성격, 건강 등]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인 면에 대해 만족한다. [관계적인 면: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 만족한다. [내가 속한 집단: 가족, 학교, 학급(반), 청소년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질문 속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번호를 골라 ○표 하세요.

4	즐거움	①	②	③	④	⑤
5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6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7	짜증나는	①	②	③	④	⑤
*8	부정적인(비관적, 소극적, 싫은 감정, 불행, 불안 등)	①	②	③	④	⑤
*9	무기력한(기운이 없다, 몸이 무겁다, 피곤한, 귀찮음, 울적하다 등)	①	②	③	④	⑤

(성인용)

귀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인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인 면(주의 사람들과 관계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나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즐거움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편안한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짜증나는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무기력한 감정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비스 만족도

척도명	서비스 만족도	대상	청소년/성인
척도소개	■ 본 척도는 국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함		
채점방법 및 해석	■ 5점 척도, 총 11문항으로 구성		
	■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7	1,2,3,4,5,6,11
	직원 및 서비스 만족도	4	7,8,9,10
	■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노방환(2013). 노인복지관의 실내외 환경적 요인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분석. 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곳에서 받는 서비스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처음 이곳에 있을 때 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기서 받은 도움은 내가 지불한 이용료만큼의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기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서비스 만족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척도명	서비스 만족도	대상	청소년/성인
척도소개	■ 본 척도는 국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함		
채점방법 및 해석	■ 5점 척도, 총 11문항으로 구성		
	■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7	1,2,3,4,5,6,11
	직원 및 서비스 만족도	4	7,8,9,10
	■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노방환(2013). 노인복지관의 실내외 환경적 요인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분석. 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곳에서 받는 서비스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일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이곳에서 도움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처음 이곳에 있을 때 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기서 받은 도움은 내가 지불한 이용료만큼의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이곳의 직원은 자신의 업무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곳의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곳의 직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기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병·의원 이용횟수 (월 평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 후
	월()회	월()회

2024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발 행 일 2024년 01월
발 행 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발 행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층(303호)
전 화 043) 820-3651, 3652, 3653, 3654
팩 스 0507) 489-6438
홈페이지 www.cbcsi.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